

부산지방법원 2020. 7. 16 선고 2020가단71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7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96. 10. 8. 접수 제471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2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민희진

별지